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0일, 진선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3차 교육위원회(2025.9.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진선미의원)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후 해당 지

역의 학령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 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사업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 의무가 없었던 법적 공백을 해소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나아가 교육감이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지역 내 교육 인프라의 추가 확충이나 조정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교육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개정안은 제7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의 내용만으

로는 해당 조항이 교육환경평가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기존 제7조제1항의 후단에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교육환경평가와 관련된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의 교육환경평가 관련 조문 후단에 함께 규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조항이 교육환경평가와 관련된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조항을 교육환경평가 관련 조문 후단에 함께 규정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작성”을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7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교육환경평가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사”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현행과 같음)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 ① ----- ----- ----- ----- ----- ----- -----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

② ~ ⑤ (생 략) <u><신 설></u>	<u>제7조의2(변경사항</u> <u>통보) 사업시행자</u> <u>는 사업계획의 내</u> <u>용 중 학생 수 증</u> <u>가 등 해당 지역의</u> <u>교육환경에 중대한</u> <u>영향을 미칠 수 있</u> <u>는 사항으로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u> <u>사항을 변경하는</u> <u>경우에는 그 사실</u> <u>을 즉시 교육감에</u> <u>게 통보하여야 한</u> <u>다.</u>	<u>야 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작성”을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u>작성</u>)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u>작성</u>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등) ① -----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	-----
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	-----
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	-----
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후단	----- . 이
<u>신설</u> >	<u>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u>
	<u>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u>
	<u>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u>
	<u>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u>
	<u>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u>
	<u>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u>
	<u>한다.</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